



- 進學 青少年에 대한 職業訓練
- 訓練生の 就業斡旋 및 事後管理
- (2) 서울特別市 市立 엘림敬老院
- 老人福祉法 施行規則 第8條 該當者의 受容 保護
- 受容者의 心身 健康 維持를 위한 相談指導

다.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金南中)

이 改正案은 엘림福祉타운의 施設物全部를 우리市에 寄附採納을 완료함에 따라 그 措置로써 施設物에 대하여 우리市 所有財産으로 登錄하여야 하므로 本 條例를 改正하는 것은 妥當하다고 思料됨.

4. 質疑 및 答辯要旨

○金演洙委員: 施設物이 竣工되어 3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寄附採納하는 理由와 서울市 管轄外의 地域에 設置되어 市에서 補助金을 支援할 경우 결국은 서울市 豫算 浪費의 要因이 되고 施設利用者 역시 서울市民만이 아닐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결국 國家事業으로 해야 할 것을 서울市에서 負擔해야할 理由는 무엇인가?

○李浩助保社局長: 순복음교회측의 當初約束(100億 投資) 移行이 遲延되어 寄附採納이 늦었고 運營은 순복음교회에서 運營費를 自體 負擔 運營함으로 國費나 市費支援은 없음.

施設物 利用은 서울市民이 60%, 京畿道民이 40% 정도 利用토록 計劃 되어있음.

○康明秀委員: 서울市에서 20億원을 投資해서 土地를 買入한 경우 및 순복음교회에서 100億원을 投資해서 建物을 지어 서울市에 寄附採納한 經緯

名稱이 "엘림"이라는 外國語로 무슨뜻인지 理解와 記憶이 容易치 않은데 우리말로 바꿀수 없는지 그리고 市立施設名에 外國語를 사용하는 것은 合當치 않는데 局長의 의견은?

施設物 受託管理者의 運營이 不實할 경

우 運營者를 서울市 任意로 交替하거나 市 直營施設로 轉換할 수 있는지 여부?

○李浩助保社局長: 施設名稱은 運營者의 希望에 따라 命名하였는데 議會의 意見を 運營者에게 傳達 協議하여 우리말로 고쳐 보겠음. 그리고 運營者가 委託條件을 違反할시는 언제라도 委託을 取消할 수 있음.

○張柱昊委員: 建物竣工以後 建物保存登記가 2년이 걸린 理由

○李浩助保社局長: 寄附採納 說得過程이 2년이 걸렸음.

○卓炯春委員: 엘림복지원의 委託經營 經緯

○李浩助保社局長: 100億의 投資提議 따른 當初 約定事項임.

○柳光司, 李秉直委員: 不實運營의 境遇에 서울市民이 納付한 稅金으로 支援해야 하는 문제와 경기도에 位置한 시설에 20億을 投資한 것은 妥當性이 결여되니 차라리 20億을 回收하여 서울市內에 새로운 施設을 設置하는 方案은?

○李浩助保社局長: 京畿道에 位置하여도 임연히 서울市 財産임.

○李秉直委員: 委託施設物에 대한 모든 指揮 監督을 철저히 할것을 付託드리면서 提案대로 可決할 것을 同意

5. 討論 要旨

없 음

6. 審査 結果

原案 可決

서울特別市立社會福祉施設等設置및委託運營에 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제출연월일: 1991년 월 일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1. 提案 理由

不遇 및 未進學 青少年의 自立基盤造成 및 無依無託老人의 老朽生活保護를 위하여 建立한 엘림福祉타운 施設物의 寄附採納 완료에 따라, 엘림職業訓練院 및 엘림敬老院을 서

<p>울特別市立 訓練院 및 養老院으로 設置 運營하고자 함.</p> <p>2. 主要骨子</p> <p>가. 施設의 名稱 및 管掌部分 新設</p> <p>1) 서울特別市立 열림職業訓練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歲以上 24歲以下의 低所得層 未進學 靑少年에 대한 職業訓練</li> <li>• 訓練生의 職業斡旋 및 事後管理</li> </ul> <p>2) 서울特別市立 열림敬老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老人福祉法 施行規則 第8條 該當者의 受容保護</li> <li>• 受容者의 心身 健康 維持를 위한 相談 指導</li> </ul> <p>서울特別市 條例 第 號</p> <p>서울特別市立社會福祉施設等設置 및 委託運營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p> <p>서울特別市立社會福祉施設等設置 및 委託運營에 關한 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第2條 第22號 및 第2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p> <p>22. 서울特別市立 열림職業訓練院</p> <p>가. 14歲以上 24歲以下의 低所得層 未進學 靑少年에 대한 職業訓練</p> <p>나. 職業訓練生의 就業斡旋 및 事後管理</p> <p>23. 서울特別市立 열림敬老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老人福祉法 施行規則 第8條 該當者의 受容保護</li> <li>나. 受容者의 心身健康 維持를 위한 相談 指導</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新·舊 條文 對比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現 行</th> <th style="text-align: center;">改 正 (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第2條(施設의 名稱 및 管掌)</td> <td style="text-align: center;">第2條(施設의 名稱 및 管掌)</td> </tr> <tr> <td>서울特別市立 社會福祉 施設과 其他 福</td> <td>.....</td> </tr> <tr> <td></td> <td>.....</td> </tr> </tbody> </table>	現 行	改 正 (案)	第2條(施設의 名稱 및 管掌)	第2條(施設의 名稱 및 管掌)	서울特別市立 社會福祉 施設과 其他 福	.....		.....	<p>社施設(이하 “施設”이라 한다)의 名稱 및 管掌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다.</p> <p>1-21(생 략) 1-21(현행과 같음)</p> <p>22. (신 설) 22. 서울特別市立 열림職業訓練院</p> <p>가. 14歲以上 24歲以下의 低所得層 未進學 靑少年에 대한 職業訓練</p> <p>나. 職業訓練生의 就業斡旋 및 事後管理</p> <p>23. (신 설) 23. 서울特別市立 열림敬老院</p> <p>가. 老人福祉法 施行規則 第8條 該當者의 受容保護</p> <p>나. 受容者의 心身健康 維持를 위한 相談 指導</p> <p style="text-align: center;">열림福祉타운施設現況</p> <p>가. 시설명: 社會福祉施設 열림福祉타운 (열림職業訓練院, 열림敬老院)</p> <p>나. 施設의 所在地: 京畿道 軍浦市 山本洞 山37番地</p> <p>다. 施設의 概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地 65,038㎡(17,860평)</li> <li>—  건물 12개동 21,711㎡(6,568평)</li> </ul> <p>라. 열림福祉타운 施設物 寄附採納經緯</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綜合社會福祉院 建立計劃: 84. 11. 12</li> <li>• 敷地 買入: 85. 5~86. 12(個人土地 協議買收 完了)</li> <li>• 建築工事: 87. 2~88. 7(竣工)</li> <li>• 事業費: 120億원(土地買入20億원-서울市, 建築費 100億원-순복음중앙교회)</li> <li>• 施設開院: 88. 9. 5(名稱: 社會福祉施設 열림福祉타운)</li> </ul>
現 行	改 正 (案)								
第2條(施設의 名稱 및 管掌)	第2條(施設의 名稱 및 管掌)								
서울特別市立 社會福祉 施設과 其他 福	.....								
	.....								

• 建物保存登記：90. 5. 28(엘림福社會 代表 趙容基)

• 建物寄附採納：91. 8. 24(엘림福社會 → 서울시)

마. 事業內容

事業區分	受 容 能 力			受 容 人 員			備 考
	計	男	女	計	男	女	
職 業 訓 練 院	300	180	120	213	178	35	• 자동차정비 120 • 목 공 예 60 • 편 물 60 • 자 수 60
養 老 院	200	85	115	88	10	78	

바. 運營：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 위탁운영

3. 1991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件

(10時 56分)

○議長 金瓌會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1991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17條에 의하면 地方議會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監査하고자 할 때에는 所管 常任委員會別로 監査計劃書를 作成하여 本會議에 提出하고 그 承認을 얻어 監査를 施行하도록 規定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1年度 常任委員會別로 行政事務監査計劃書를 金寅東委員長 나오셔서 一括하여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金寅東 運營委員長입니다. 서울特別市議會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件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17條의2 第1項의 規定에 「所管常任委員會 또는 特別委員會는 監査計劃書를 作成하여 本會議에 提出하고 그 承認을 얻어서 監査를 施行한다」라고 規定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各 常任委員會別로 作成한 監査計劃書를 收合하여 市議會 委員會條例 第5條第1項第1號가의 規定에 의하여 當委員會에서 一括整理하여 深度있는 審査와 調整을 거쳐서 오늘 本會議에 承認을 받고자 하는 事項입니다.

이번 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件에 대해 그 主要內容을 概括的으로 말씀을 드리면 監査期間은 12月 3日 火曜日부터 12月 7日 土曜日까지 5日間이고 監査對象機關은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17條의3 第1項第1號, 2號, 4號에 의거해서 委員會에서 選定한 機關과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17條의3第1項第3號와 第5號에 의거해서 本會議의 議決을 要하는 機關이 있는데 本 監査計劃書에 포함된 本會議 議決對象機關으로서는 文化教育委員會 所管인 市 教育廳과 社會福祉委員會 所管인 보라매病院 등 2個機關이 되겠습니다. 監査班編成은 별도의 特別委員會나 班을 構成하지 않고 委員會 所管委員 全員이 監査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事務補助職員으로 專門委員 등 關係職員 6名을 配置하였고 監査資料提出 要求는 本計劃에 明示된 事項과 관련된 資料 그리고 各 監査委員이 요구하는 資料를 所管委員長에게 提出하면 所管委員長은 要求資料 目錄을 議長에게 送付하고 議長은 이를 綜合하여 監査實施 3日前까지 사전에 준비된 書式에 따라서 書面으로 要求토록 하였습니다.

監査結果의 報告 및 處理는 會議運營의 효율적인 進行을 위해 監査結果 報告書案을 各 所管委員會에서 作成 採擇을 하신 이후에 運營委員會로 移送하여 各 委員會別로 移送되어 온 監査結果 報告書案을 運營委員會에서 一括整理 採擇한 후에 本會議에 回附할 그런 計